



नेपाल 정부
산업·상업·공급부 산업부
뜨리뿌레썬르, 까트만두



원스톱 서비스 센터

문의처

नेपाल 정부, 산업·상업·공급부
산업부

원스톱 서비스 센터

뜨리뿌레썬르, 까트만두

팩스 : 01-5356212

이메일 : Fdi@Doind.gov.np

웹사이트: <http://www.doind.gov.np>



왜 네팔에 투자해야 하는가?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두 경제 대국인 인도와 중국 사이에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투자, 생산 및 무역에 있어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지형적 특성,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유산을 보유한 네팔은 기본 인프라의 지속적인 개선과 더불어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매력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제조업, 농산물 가공산업, 에너지, 관광산업 및 기타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기회가 존재합니다. 또한 네팔은 풍부한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성, 성장하는 국내 시장, 인접국 시장에 대한 우대적 접근성, 그리고 젊고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팔은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FDI는 자본 형성과 생산능력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술, 전문기술, 혁신 및 경영 노하우의 이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개방적이고 투자자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및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네팔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를 보장하고 있으며, 투자수익의 본국 송금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책자는 네팔의 투자 환경을 탐색하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 정책입안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안내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책자는 네팔에서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책 체계, 규제 절차 및 실무적 고려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투자 기회와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망함으로써 투자 유입의 확대를 촉진하고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네팔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네팔의 외국인직접투자 (FDI) (“외국인투자 및 기술이전법 (Foreign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 Act), 2019”에 따름)

네팔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외화에 의한 주식 투자
- 네팔 내 기업의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의 투자
- 산업의 설립 및 확장을 통한 투자
- 기계류의 리스를 통한 투자
- 기술이전을 통한 투자
- 벤처캐피털 펀드를 통한 투자
- 전문투자펀드(Specialized Investment Fund)를 통한 투자
- 유통증권시장(Secondary Securities Market)을 통한 투자
- 외국인투자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재투자
- 네팔 내 산업 또는 기업이 해외 자본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은행거래 경로(Banking Channel)를 통하여 투자하는 방식의 투자

최소 투자 기준금액

네팔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이루어지는 산업에 대하여 최소 투자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2022년 10월 외국인투자의 최소 투자 기준금액을 2,000만 네팔 루피(NPR 20 million)로 인하하였습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9개 세부 업종에 한하여 자동승인 절차(Automatic Route)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는 최소 투자 기준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책 및 법적 환경



네팔은 투자 촉진을 위하여 다수의 새로운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기존 법률 또한 개정 및 정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투자 및 기술이전법” (Foreign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 Act, 2019)
 - “산업기업법” (Industrial Enterprise Act, 2020)
 - “회사법” (Company Act, 2006)
 - “민관협력 및 투자법” (Public Private Partnership and Investment Act, 2019)
 - “소득세법” (Income Tax Act, 2002)
 - “외국인투자 및 기술이전규정” (Foreign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 Regulation, 2021)
 - “산업기업규정” (Industrial Enterprise Regulation, 2022)
 - “환경보호법” (Environment Protection Act, 2019)
 - “환경보호규정” (Environment Protection Regulation, 2020)
- Bottom of Form



외국인직접투자(FDI) 승인 절차

업무	관할 기관	관련 법률 및 규정
외국인투자 승인	산업부 외국인투자 및 기술이전과	"외국인투자 및 기술이전법 (FITTA), 2019" 및 개정법
회사 등록	회사등록청	"회사법, 2006" 및 개정법
은행계좌 개설	네팔 A등급 상업은행	"은행 및 금융기관법, 2017"
부가가치세(VAT)· 납세자등록번호(PAN) 등록	원스톱서비스센터(OSSC) / 내국세무서	"부가가치세법, 1996", " 소득세법, 2002" 및 개정법
산업 등록	산업부 인허가 및 등록과	"산업기업법, 2020" 및 관련 규정
외국인투자 사전 신고	네팔중앙은행(Nepal Rastra Bank, NRB)	"네팔중앙은행법, 2002" 및 개정법
외환 거래 및 투자금 송금	네팔중앙은행(Nepal Rastra Bank, NRB)	"네팔중앙은행법, 2002" 및 개정법

주: 상기 모든 서비스는 현재 산업부(DOI) 산하 원스톱서비스센터(OSSC)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OSSC에서 제공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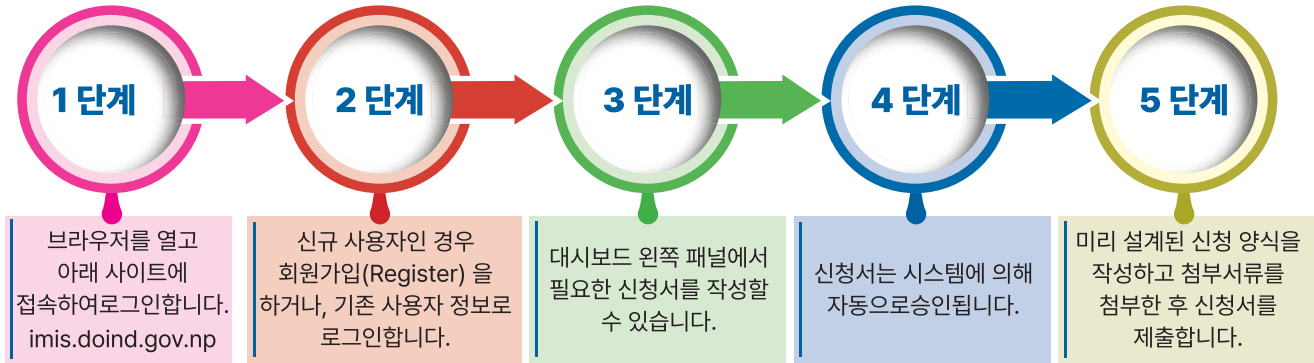


자동 승인 제도 (Automatic Route)

IMIS(산업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자동 승인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가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네팔 정부는 네팔 관보 2082년 11월 4일자 공고에 따라 에너지 기반 산업, 농업·임업 기반 산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산업, 인프라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및 관광업 등 7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다.

자동 승인 절차 (Automatic Route)



다음은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현행 법률의 주요 규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가) 외국인투자 및 기술이전법 (FITTA), 2019

-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민 대우 및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한다.
- FITTA의 제한업종(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100% 외국인투자를 허용한다.
-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기술이전을 허용한다.
- 전환성 외화(Convertible Currency)로 이익금을 송금(본국 송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투자자에게 사업비자 및 거주비자를 제공한다.
- 투자 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스톱서비스센터(One-Stop Service Centre)를 운영한다.
- 전환성 외화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일부 산업 분야에 대하여 자동 승인 제도(Automatic Route)를 운영한다.
- 외국인투자 승인 온라인 신청 및 처리를 지원한다.

(다) 회사법, 2006 (2019 년 개정)

- 온라인 회사 등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상표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 공개회사(Public Company)가 전환 절차 없이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의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으며, 비공개회사 또한 공개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외국회사의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지점(Branch Office)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 적대적 인수·합병(Hostile Takeover)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을 허용하고 있다.
- 주식을 액면가를 초과하는 가격(프리미엄 가격)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투자법 (PPPIA), 2019

-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고위급 기관인 네팔투자위원회 (Investment Board Nepal, IBN) 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 별도의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부서 및 투자 부서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 사업의 건설, 운영 및 확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성 격차 보조금 (Viability Gap Funding) 제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조사(타당성 검토) 허가서 발급, 양해각서(MoU) 및 각종 계약 체결, 투자 승인 부여 등의 권한을 가진 원스톱서비스센터(One-Stop Service Centre) 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라) 산업기업법 (IEA), 2020

- 산업을 고정자산 투자 규모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불법 파업을 제한하기 위하여 “무노동 무임금(No Work, No Pay)”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원스톱서비스센터(One-Stop Service Centre)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신제품의 시장 개척을 위하여 해외 모회사(Foreign Parent Company)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고위 경영직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산업 환경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계약생산(Contract Manufacturing)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양한 조세 및 재정상 인센티브(Fiscal Incentives)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스톱 서비스 센터(One Stop Service Centre)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 DOI)의 원스톱 서비스 센터(OSSC)는 “산업기업법(Industrial Enterprise Act), 2020” 및 “외국인투자 및 기술이전법(Foreign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 Act), 2019”에 근거하여 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OSSC의 목적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투자 및 산업 관련 각종 서비스를 단일 창구에서 제공하는 데 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등록 단계부터 사업 종료 및 청산에 이르기까지 OSSC를 통해 제공된다. 또한 OSSC는 행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에 대한 승인, 면제 및 인센티브 제공 업무를 수행하며, 산업체, 기업가 및 투자자가 전기, 용수, 토지 및 기타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OI 산하 OSSC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승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 투자자, 그 대리인 및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또한 간이환경조사(Brief Environmental Study, BES) 및 초기환경영향평가(Initial Environmental Examination, IEE)를 승인하고, 외화 환전 및 외환거래 편의 제공을 위한 추천 업무를 수행한다.

외국인투자 절차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승인 권한은 नेपाल투자청(Investment Board Nepal, IBN)과 산업부 (Department of Industry, DOI)에 부여되어 있다. 투자 승인을 취득한 후에도 투자자는 투자사업을 실제로 개시·운영하기에 앞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부(DOI) 또는 नेपाल투자청(IBN)으로부터 투자 승인 취득

나. 외국인직접투자(FDI) 승인 후 회사등록청(Company Registrar's Office)에 회사 등록

다. 국세청(Department of Inland Revenue)에 세무 등록

라.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

마. 산업부(DOI)에 산업체 등록

바. 중앙은행 관련 승인 절차 이행

- 적법한 은행 경로를 통하여 외화를 반입하기 위하여 नेपाल중앙은행 (Nepal Rastra Bank)에 사전 통지(Pre-Notification) 실시
- 송금된 외화의 등록 및 기록

사. 관계 정부기관으로부터 기타 허가 및 승인 취득

- 비자(Visa)
- 상표(Trademark)
- 환경 관련 승인(Environmental Clearance)
- 토지 취득(Land Acquisition)
- 기타 관련 인허가 등

상기 절차를 완료한 후 투자자는 투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산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FDI) 승인 시 제출서류 Bottom of Form

네팔에서의 투자 절차는 투자 승인 취득으로 시작된다. 승인 및 각종 인허가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제출서류가 상이하며, 산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FDI) 승인 신청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산업부(DOI) 투자정보관리시스템 포털(imis.doind.gov.np)을 통한 온라인 투자 승인 신청서
- 투자자가 서명 및 날인한 사업계획서(Project Proposal)
- 합작투자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 (투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모든 투자자가 서명한 것)
- 외국인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 사본의 공증본,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정관 (Memorandum of Association) 및 정관세칙(Articles of Association)의 공증본
- 국내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시민권 증명서 (Citizenship Certificate)의 공증본,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 및 정관세칙 (Articles of Association)의 공증본
- 외국인 투자자의 이력서(Biodata) 또는 투자자가 서명한 회사소개서(Company Profile)
- 외국인 투자자의 본국 소재 은행이 발급한 재정신용증명서(Financial Credibility Certificate)
- 회사 또는 투자자가 발급한 위임장(Letter of Authorization) (필요한 경우)
- 투자에 관한 외국법인의 이사회 결의서(Board Resolution) 공증본
- 외국법인의 주주 및 이사의 여권 사본 공증본

기존 산업체의 지분 취득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승인

기존 산업체의 지분 취득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승인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지분 양도인(Share Transferor)이 산업부(DOI) 투자정보관리시스템 포털(imis.doind.gov.np)을 통하여 제출한 온라인 신청서
- 투자자들이 서명한 지분양도계약서(Share Transfer Agreement)
- 외국인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Board Meeting Minutes), 법인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및 회사소개서(Company Profile)의 공증본
- 외국인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 사본 및 인적사항서(Bio-data)의 공증본
- 외국인 투자자의 본국 소재 은행이 발급한 재정신용증명서(Financial Credibility Certificate)의 공증본
- 회사등록청(Office of Company Registrar)에 등재된 최신 주주명부(Current Shareholders' List) 및 감사보고서(Audit Report)
- 조세완납증명서(Tax Clearance Certificate) 또는 조세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확인서(Extension of Certificate)
- 회사를 대리하여 서명할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Letter of Authorization)
- 산업등록증명서 또는 회사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Industry/Company Registration)
- 외국법인 이사 및 주주의 여권 사본 공증본(Notarized Copy of Passport of Directors/ Shareholders of the Foreign Company)

기술이전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술이전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허용된다.

- 특허(Patent), 디자인(Design), 상표(Trademark), 영업권(Goodwill), 기술적 노하우 (Technical Know-how), 기술지식의 사용(프랜차이즈(Franchise), 공식(Formula), 공정(Process) 등)
- 사용허가(User License) 또는 기술정보 제공(Provision of Technical Information) (노하우 공유(Know-how Sharing))
- 경영 및 기술 서비스(Management and Technical Services),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마케팅 및 시장조사(Marketing and Market Research), 재무(Finance), 회계 및 감사(Accounting and Auditing), 엔지니어링(Engineering), 아웃소싱(Outsourcing), 인적자원 아웃소싱(Human Resource Outsourcing), 디지털 데이터 처리(Digital Data Processing) 및 디지털 데이터 이전(Digital Data Migration), 디자인 서비스(Design Services) 또는 기타 기술적 기능이나 지식(Other Technical Skills or Knowledge)
-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기술이전계약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승인 시 제출서류

기술이전계약(Technology Transfer Agreement)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승인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산업부(DOI) 투자정보관리시스템 포털(imis.doind.gov.np)을 통한 온라인 신청서
- 나. 투자자가 서명한 기술이전계약서(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 다. 국내법인의 법인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 및 정관세칙(Articles of Association) 사본의 공증본
- 라. 외국인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 사본의 공증본,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정관

(Memorandum of Association) 및 정관세칙(Articles of Association)의 공증본

- 마. 외국인 투자자의 인적사항서(Bio-data) 또는 투자자가 서명한 회사소개서(Company Profile)
- 바. 기술이전과 관련된 당사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Board of Directors Meeting Minutes)
- 사. 회사가 발급한 위임장(Letter of Authorization)
- 아. 최신 감사보고서(Audit Report) 및 조세완납증명서(Tax Clearance Certificate)의 공증본

투자원금, 배당금, 로열티 등의 송금(본국송환) 시 제출서류

네팔 법령은 투자원금, 배당금 및 로열티 등의 본국송환(Repatriation)을 허용하고 있다. 본국송환 허가는 투자 승인을 부여한 기관인 네팔투자청(IBN) 또는 산업부(DOI)의 추천과 관련 세금의 완납 확인을 전제로 네팔중앙은행(Nepal Rastra Bank)이 발급한다. 산업부(DOI)에 본국송환 추천을 신청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산업부(DOI) 투자정보관리시스템 포털(imis.doind.gov.np)을 통한 온라인 신청서 및 산업등록증명서(Industry Registration Certificate)와 회사등록증명서(Company Registration Certificate) 사본.
- 나. 외국인직접투자(FDI) 승인서 사본
 - i. 이사회 회의록(Board of Directors Meeting Minutes)
 - ii. 승인된 주식양수도계약서(Share Purchase Agreement) 사본
 - iii. 배당금 지급에 관한 정기주주총회(AGM, Annual General Meeting) 결의서
- 다. 승인된 대출계약서(Loan Agreement) 사본 또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서의 공증 사본
- 라. 승인된 기술이전계약서(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또는

임대투자계약서(Lease Investment Agreement) 사본

- 마. 최신 감사보고서(Audit Report), 조세완납증명서(Tax Clearance Certificate) 및 블랙리스트 미등재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의 공증 사본
- 바. 회사등록청(Office of the Company Registrar)에 등재된 발기인(Promoters) 및 주주(Shareholders) 명부 사본
- 사. 네팔중앙은행(Nepal Rastra Bank)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등록확인서(FDI Recording Letter)
- 아. 주식 매각대금 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 자. 공인회계사(Chartered Accountant)가 확인한 로열티 산정내역서
- 차.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비자

외국인 투자자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 및 가족 구성원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승인을 취득한 후 투자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의 사업비자(Business Visa)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비자의 만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산업부(DOI)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 비자 신청 시에는 신청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각 비자 유형별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자를 위한 사업비자

- 가. 산업부(DOI) 투자정보관리시스템 포털(imis.doind.gov.np)을 통한 온라인 비자 신청서
- 나. 최근 발급받은 비자가 포함된 여권 사본의 공증본
- 다.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가 발급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승인서
- 라. 산업등록증명서(Industry Registration Certificate) 또는 회사등록증명서(Company Registration Certificate) 사본
- 마. 운영 중인 산업체의 경우 산업체 실사보고서(Industry Inspection Report)
- 바. 외국인 투자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Letter of Authorization) 및 여권 사본의 공증본
- 사. 부양가족(Dependents)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공증본
- 아. 투자자 또는 대리인의 연락처 주소 및 전화번호

거주비자

- 미화 100만 달러(USD 1,000,000) 이상을 일시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는 본인, 그 대리인 및 가족 구성원을 위하여 거주비자(Residential Visa)를 신청할 수 있다. 거주비자 추천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산업부(DOI) 투자정보관리시스템 포털(imis.doind.gov.np)을 통한 온라인 비자 신청서
 - 나. 최근 발급받은 비자가 포함된 여권 사본의 공증본
 - 다. 미화 100만 달러(USD 1,000,000) 이상을 일시에 투자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라. 산업등록증명서(Industry Registration Certificate) 사본
 - 마. 해당 산업체의 물리적·재정적 진척보고서(Physical and Financial Progress Reports)
 - 바. 부양가족(Dependents)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관광비자

비관광비자(Non-Tourist Visa) 추천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산업부(DOI) 투자정보관리시스템 포털(imis.doind.gov.np)을 통한 온라인 비자 신청서
- 나. 전국 일간신문(National Daily Newspaper)에 게재된 구인공고(Job Vacancy) 사본
- 다. 외국인 근로자와 해당 산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서 사본의 공증본
- 라. 해당 산업체의 진척보고서(Progress Report)
- 마. 외국인 근로자의 인적사항서(Biodata) (해당 산업 분야의 경력을 포함한 것) 및 학력증명서(Academic Qualification Certificates)

- 바. 최근 발급받은 비자가 포함된 여권 사본의 공증본
 - 사. 외국인 근로자가 교육할 예정인 네팔인 근로자 명단
 - 아. 노동승인서(Work Approval) 및 노동허가서(Work Permit)
 - 자. 산업등록증명서(Industry Registration Certificate) 사본
 - 차. 회사의 최신 감사보고서(Audit Report) 및 조세완납증명서(Tax Clearance Certificate) 사본
- 주: 비관광비자(Non-Tourist Visa)의 경우, 비자 만료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 관련 법령의 준수

네팔 법령에 따르면 산업체의 설립, 기존 산업체의 확장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간이환경조사(Brief Environmental Study, BES) 및 초기환경영향평가(Initial Environmental Examination, IEE)에 대한 산업부(DOI)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승인 절차는 “환경보호법 (Environment Protection Act), 2019”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분쟁해결

네팔에는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투자 관련 분쟁의 해결에는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 가. 산업부(DOI)는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간의 투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 및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
- 나. 산업부(DOI)의 조정 또는 중재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해당 분쟁은 합작투자계약서 (Joint Venture Agreement)의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 다. 해당 분쟁이 계속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네팔 중재법(Arbitration Law of Nepal)의 규정에 따라 해결한다.

적용 수수료 및 요금

산업부(DOI)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는 일정한 수수료 및 요금이 적용된다. 일부 수수료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승인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환급 가능할 수 있으며, 적용 수수료는 경우에 따라 특정 법령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번호	세부 사항	상세 내용
가	FDI 승인	무료
나	회사 등록	회사법(Company Act)에 따름
다	PAN/VAT 등록	무료
라	은행 계좌 개설	은행 및 금융기관법(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 Act)에 따름
마	산업 등록	무료
바	외국인투자 관련 자본 통화 환전	무료
사	비자	출입국관리법(Immigration Act)에 따른 수수료 적용

주 : 일부 서비스의 경우 환급 가능한 예치금(refundable deposit)이 요구될 수 있다.

(“외국인투자 및 기술이전법 (Foreign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 Act, 2019, FITTA)”에 따름)

- 축산, 수산, 양봉, 과일, 채소, 유지종자, 두류, 낙농업 및 농업기술·기계화 등 1차 농산물 관련 기술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와 관련된 대규모 산업 중 총 생산량의 최소 75%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타 산업 또는 업종
- 가내 및 소규모 산업
- 개인 서비스업(이발, 재봉, 운전 등)
- 무기, 탄약, 화약 또는 폭발물 및 핵무기·생물무기·화학무기(NBC) 관련 산업, 원자력 및 방사성 물질 생산 산업
- 부동산업(건설업은 제외), 소매업, 국내 택배 서비스, 지역 외식 서비스, 환전업, 송금 서비스
- 여행사, 관광 가이드, 트레킹 및 등산 가이드, 홈스테이를 포함한 농촌 관광업
-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온라인 뉴스 등 대중매체 사업 및 자국어 영화 제작 산업
- 경영, 회계, 엔지니어링, 법률 자문 서비스 및 언어 교육, 음악 교육, 컴퓨터 교육 관련 산업
- 외국인 지분이 51%를 초과하는 컨설팅 서비스업
- 외국인 투자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차량공유서비스업(Ride Sharing Service)
- 항공기운항, 교육훈련, 정비 및 여객서비스시설 제공 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는 외국인 투자
 - (가) 국제항공운송업: 80%
 - (나) 국내항공운송업: 59%
 - (다) 항공교육훈련기관: 95%
 - (라) 항공정비기관: 95%

외국인직접투자(FDI) 상위 10개 투자국

번호	국가명	총 프로젝트 수	총 외국인투자액
1.	China	3271	289,906,564,000
2.	India	912	115,776,269,800
3.	Republic of Korea	416	26,411,580,000
4.	United States of America	565	22,620,415,900
5.	United Kingdom	208	14,469,680,000
6.	Australia	96	4,767,262,100
7.	Singapore	72	9,591,840,000
8.	Bangladesh	192	3,301,392,000
9.	Hong Kong	55	31,385,660,000
10.	Japan	308	4,466,815,352